

1999. 11. 13
제90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기획총무위원회
(보고자 : 전문위원 장재영)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증정 조례안

1. 제안사유

-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기진작으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에 별정직 공무원으로 배치된 이들을 전원 일반직으로 전환하고(18명), 미배치된 동에 추가 배치(3명)
- 「기구·정원규정개정령」 시행에 의거 2단계 조직개편에 따른 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기준을 변경

2. 주요골자

가. 정원의 총수 : 529명 → 532명 (3명 증)

- 집행기관의 정원 “510명”을 “513명”으로 한

나.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표 【표1】

- 정원의 총수 : 569명 → 572명 (3명 증)
- 집행기관의 정원 : 550명 → 553명 (3명 증)

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표 【표2】

- 정원의 총수 : 548명 → 551명 (3명 증)
- 집행기관의 정원 : 529명 → 532명 (3명 증)

라. 부칙 제4조(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중

- “매년 7월 31일까지”를 “매년 6월 30일까지”로

3. 검토의견

- 이번에 개정 논의되고 있는 사항은 행정자치부의 「社會福祉專門要員」一般職轉換 및 新規採用 指針과 「機構·定員規程改正令」施行에 따른 地方行政組織運用指針에 따라, 종전에 별정직 공무원으로 분류·관리한 사회복지전문요원 전원의 일반직 전환과 더불어 3명의 신규채용 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정원의 총수와 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에 관한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타당성 여부는 행정자치부 지침의 성격과 증원인원의 적정성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관리에 관한 행정자치부 지침의 성격에 관한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관리에 관한 관련법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초과 정원에 관한 승인신청권(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4조 제2항)과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관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동규정 제15조·제20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는 조례의 규율사항(동규정 제21조 제1항)으로 하고 있고,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규칙의 규율사항(동규정 제21조 제2항)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행정자치부 장관에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정원관리에 관한 시정요구권·조직진단권고권 그리고 조직관리 지침의 시달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동규정 제22조·제23조 제2항·제23조의2).
- 이번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社會福祉專門要員」 一般職轉換 및 新規採用 指針과 「機構·定員規程改正令」 施行에 따른 地方行政組織運用指針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3조의2에 따른 것이고, 조직관리에 관한 지침이 시달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달된 조직관리방향과 그 취지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조직관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서구청장이 제출한 본 조례안은 그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심도있고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앞으로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단순히 지침내용에 따른 타당성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 지침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반드시 제시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증원인원의 적정성 문제입니다.

- 오늘날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인 동시에 그것에 대한 요구가 국민의 권리로서 인정되고 있으며, 우리 헌법에서는 이와 관련된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고, 이러한 헌법 이념을 구체화하기 위한 수많은 법령들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 사회복지로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부과하여 사회복지로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과 관련한 상담·작업치료·직업훈련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동법 제4조 제1항·제2항),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또는 사회복지전담기구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로 임용되는 사회

복지전담공무원(즉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4조 제1항·제2항).

-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에 두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생활보호대상자 세대수에 대비한 동별 배정기준에 따라 배치되고 있으나 아직도 미배치된 읍·면·동이 우리 서구의 경우 3개동(전국적으로는 32%인 1,126개소)입니다. 이번에 개정 논의되고 있는 내용도 증원되는 3명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미배치된 농성2동, 화정3동 그리고 화정4동에 배치하자는 것입니다.
- 열악한 복지현실과 복지대상자의 급증에 따른 향후 계속적인 복지행정의 수요증가, 지역간에 균등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 지방자치단체의 궁극적 목적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있다는 점 그리고 국가가 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3명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증원은 적정하다고 하겠습니다.

4. 참고사항

- 헌법
-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 사회복지사업법